

학과(전공)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.08.26. 개정 2021.11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과(전공) 교육과정운영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<개정 2021.11.04.>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계열(전공), 학과 교육과정의 운영
- ② 계열(전공), 학과 CQI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계열(전공), 학과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사항

제3조 (구성) <개정 2021.11.04.>

- ① 위원회는 계열(전공), 학과에 둔다.
- ② 위원장은 계열(전공)장, 학과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계열(전공), 학과 전임교원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학과 소속교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1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전공심화교육과정학과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촉인원 중 산업체 인사 50% 이상 구성하고 회의 시 50%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1.04.>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운영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1.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3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·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[별지 1]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당 등)
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21.08.2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11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회 의 록

학과(전공)명					
회의주제					
일 시		장 소		기록자	(인)
참 석 자	소속	직위	성명	서명(날인)	비고
		위원장			
		위원			
		위원			
		위원			
		위원			
		팀장			
		팀원			
<p>[필수기재내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교육과정운영 환류내용- 학과별 직업기초능력 선정이유 기재- 차기년도 교육과정개발이 요구되는 사항					